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「화학제품안전법」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·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필수 안전기준 강화

1)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

○ 방향·탈취제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

- 방향·탈취제 지속방출형 제품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마련

○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 관리 개선

- 승인 대상 제품인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‘가습기’ 정의 추가

2) 기존 품목·용도의 관리물질 추가

- 세정제 등 20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

3)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 확대

- 전 품목 ‘캡슐형 제품’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

4)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

- 탈취제 · 표백제 등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

나. 규제 개선 · 합리화

1)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

-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,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

2) 대용량 제품의 용기 · 포장 안전기준 개선

-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 · 누수시험 면제, 중량 · 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

3)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

- 세탁세제 · 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 · 천연 구분없이 적용

다. 기타 사항

1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

2)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